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6,700,000	17,301,000
일반회계	546,000,000	16,380,000
특별회계	30,700,000	921,000
기타특별회계	30,700,000	921,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12,000	24,3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4,000	3,72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240,000	157,2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	1,2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51,000	55,53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1,800
치수사업특별회계	336,000	10,08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082,000	152,46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155,000	514,6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5,298,086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